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합8869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앤율 [담당변호사 김형선]

피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조금규]

변론 종결2024. 8. 20.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4.부터 2023. 10. 18.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4.부터 2023. 10. 19.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4.부터 2023. 10. 17.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00원, 나.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C은 위 가.항 기재 돈 중 650,000,000원, 피고 D는 4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5. 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진주시 F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에 관한 사업비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에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E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금 상환 만기일을 2023. 5. 13.로 정하였으며, 위 상환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 5%로 정해져 있고,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위 이자에 연체 가산금리 연

3%를 합산하여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 C은 E의 주주인 G의 배우자이며, 피고 D는 E의 주주인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위 각 피고들은 2022. 5. 3.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게 되는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피고 B의 손해 일부를 각자의 비율에 따라 책임진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피고 C과 피고 D가 부담하기로 한 비율은 피고 C 32.5%, 피고 D 22.5%이다).

마. 이 사건 대출계약,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이 사건 합의서의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대출약정서

(이하에서 대주는 원고, 차주는 E, 연대보증인은 피고 B이다)

제2-1조(차주에 대한 대출)

① 대주는 부동산매매계약상 계약금, 토지용역비, 기타 사업비, 유동화비용, 수수료, 이자 유보·지급 등 목적으로 차주에게 소요되는 금 이십억 원(20억 원)을 대출약정금으로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제3-1조 (이자율, 이자기간 등)

① 대출약정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5.0%(고정금리)로 정한다.

② 대출약정금에 대한 이자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대주 요청 시 위 이자기간이 1개월 단위 등으로 조정될 수 있고 차주는 이의 없이 동의한다.

제3-2조 (연체이자)

차주가 본 약정 기재 지급,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원금, 이자, 수수료 및 기타 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또는 지급)하지 못하는 때에는 차주는 제3-1조 제1항 기재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0%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하는 한편넣기 방식에 의함)를 기초로 일할 계산한 연체이자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대출원금의 상환)

대출원금의 상환만기일은 대출약정금 인출일로부터 2023. 5. 13.(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로 정하며, 차주는 대출원금을 대주에게 대출원금의 상환만기일까지 만기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5-1조(연대보증인의 대출원리금 등 연대보증)

①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금 인출일로부터 피담보채무 완제시까지 피담보채무를 차주와 연대하여 보증한다(보증한도 대출약정금의 130% 상당액). 연대보증인은 대출원금의 상환만기일이 도래하거나 본 약정서상 차주가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이하에서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E, 연대보증인은 피고 B이다)

제2조 연대보증채무의 내용

①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4. 피담보채무의 범위: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상의 대출원리금 및 금융계약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5. 보증한도: 대출약정서상 대출약정금인 금이십억 원(20억 원)의 130% 상당액

6. 보증기한: 피보증채무 완제시까지

②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상 대출원금의 상환만기일이 도래하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즉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대보증인의 본조 기재 연대보증채무의 내용은 한정근보증에 해당함을 확약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합의서

(이하에서 갑은 피고 C, 을은 피고 B, 병은 피고 D이다)

1. 본 합의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로서 을이 지게 되는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갑, 을, 병 간의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본 합의서의 모든 내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설립된 E의 대표이사로서 을이 지게되는 연대보증 채무에 따른 손해액에 한정한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을에게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확정된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 갑이 32.5%, 을이 45%, 병이 22.5%의 비율로 책임지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I이 부담하는 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 피고 D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피고 B과 연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약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 2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설령 피고 C과 피고 D가 원고에 대해 직접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 원리금을 합의서로 정한 내부적 분담 비율(이하 '분담비율'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 중 분담비율 32.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6억 5,000만 원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D는 피고 B에 대하여 분담비율인 22.5%에 따라 산정된 금액 4억 5,000만 원²⁾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런데 피고 B은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피고 C, 피고 J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 피고 J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계약에 따른 E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나 피고 B이 대출계약에 정해진 변제기 2023. 5. 13.을 경과한 현재까지 원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20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과한 202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0. 18.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E은 사업을 위한 신규 대출(이하 '본 PF 대출'이라고 한다)을 일으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는 본 PF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인데, 아직 본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본 PF 대출이 이루어질 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에서 실시된 법리에 의하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E이 '2023. 5. 13.' 상환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정해진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

②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에서 실시된 법리에 의하면 조건, 불확정 기한 등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시켜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이와 같은 부관이 붙어 있다는 점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시기와 '본 PF 대출 약정의 성부'를 연계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E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본 PF 대출을 통해서만 갚을 수 있었다거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본 PF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기존 대출의 상환기일을 수차례 연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에 일의적으로 정해진 상환기일과 달리 본 PF 대출의 성립 여부가 불확정기한이나 조건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피고 B은 「원고는 단순히 돈을 대여한 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적극 관여한 자이므로 인·허가가 불가능해지고 본 PF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E에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금융기관 내지 PF 대출의 '대주'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사업의 성패에 따라 대출금 20억 원을 포기하거나 그 변제를 유예해 줄 의사가 가졌거나 그러한 취지로 대출계약서의 기재와 다르게 E과 이면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관할 관청인 진주시에서 '건폐율' 등을 이유로 관련 인·허가를 거부함에 따라 대출계약의 변제기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조차 얻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PF 대출에 참여한 대주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와는 무관하게 시행사인 E과 피고 B의 귀책으로 본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14.부터 2023. 10. 18.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부분 주위적 청구 원인으로 「피고 C, 피고 D가 직접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 C, 피고 D가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를 내부적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C, 피고 D의 채무 발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사건 합의서'인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들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당사자로 참여하여 작성한 문서는 아닌 점, ② 이 사건 대출계약이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도 차주인 E의 대표이자 연대보증인인 피고 B만이 기명날인하였을 뿐 피고 C이나 피고 D가 그 체결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위 각 계약서에 피고 C, 피고 D의 채무 부담에 관한 아무 기재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을 보더라도, 피고 C와 피고 D의 책임을 정하면서 "본 합의서는 피고 B이 지게 되는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B, 피고 C, 피고 D간의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B만이 연대보증채무자임을 당연한 전제로 E의 다른 주주들인 피고 C, 피고 D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정하겠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점, ④ 원고의 직원인 K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로 피고 C, 피고 D 또한 대출금 채무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확인한 후 대출 승인이 되었다는 것일 뿐, 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새롭게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직접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의 예비적 청구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 C, 피고 D는 「피고 B은 무자력이 아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과 피고 B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피대위채권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3)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다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또한 위 법리에다가 갑 제3,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 적극재산의 가액을 약 15억 원 이상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적극 재산	1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182,500,000	갑 제7, 8호증
2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	460,000,000	갑 제7, 9호증	
3	고양시 덕양구 P아파트 Q호	485,000,000	갑 제7, 10호증	
4	예금채권(R은행, (계좌번호 1 생략)	2,080,487	갑 제11호증	
5	예금채권(R은행, (계좌번호 2 생략)	4,688,373	갑 제11호증	
6	예금채권(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4,027,470	갑 제12호증	
7	예금채권(T은행, (계좌번호 4 생략)	687,828	갑 제13호증	
소계	1,138,984,158			
소극 재산	1	U 채무	193,396,600	갑 제14호증
2	T은행 채무(계좌번호 5 생략)	10,000,000	갑 제14호증	
3	S은행 채무(계좌번호 6 생략)	233,000,000	갑 제12호증	
4	T은행 채무(계좌번호 4 생략)	1,082,211	갑 제13호증	
5	V은행 채무	280,800,000	갑 제15호증	
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	2,000,000,000	갑 제3, 4호증	
소계	2,718,278,811			
순자산 합계액	-1,579,294,653			

②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채권(피보전채권)과 피고 B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합의서에 따른 채권(피대위채권)은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의 20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변제한다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③ 그리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이 피고 B의 자력만으로는 전액 변제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 C, 피고 D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측에 대여하였던 것인 점(갑 제6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피고 B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원고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러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피고 B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 B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D,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이 변제하여야 하는 20억 원 중 각자의 부담비율에 따라 피고 C이 6억 5,000만 원(32.5%), 피고 D가 4억 5,000만 원(22.5%)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이 부담하는 각자의 채무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공통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 B과 나머지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이를 내부적으로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성질상 일부 피고의 의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피고의 의무도 중첩되는 부분에서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각 피고들의 약정금 변제 의무는 '공동하여' 이행해야 할 성질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20억 원 중 6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20억 원 중 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D,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B의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소정의 비율로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① 위 "손해가 확정되면"의 의미는 피고 B이 실제 출연하여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를 말하고 아직 피고 B이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므로 피고 B의 사업으로 인한 손해가 확정된 것도 아니며 피고들 사이에서 손해의 처리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 C, 피고 D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는 아직 성립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피대위권리로서 피고 B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합의서에 기초한 채권은 이미 성립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체결되기 전날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D, 피고 C은 실질적으로 E의 주주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들과 업무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사실상 E의 사업 주체의 지위에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이와 같은 당사자들의 지위나 합의서 작성 당시의 의사,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E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도록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 B이 확정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즉시 내부적으로 피고 C와 피고 D가 이를 함께 출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B이 '실제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뒤에 비로소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볼 수는 없다.

③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본 합의서의 모든 내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지게 되는 연대보증 채무에 따른 손해액에 한정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의서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사업 전체의 성패가 확실시 된 뒤의 E의 손익 전체가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게 될 연대보증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확정적으로 성립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나머지 피고들의 합의서 상의 채무 부담의 의무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3항 부분에 "손해액의 확인과 처리방법을 합의하여 부담비율에 따라 책임진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손해액의 부담 과정에서 그 구체적 이행 시기나 방법 등을 협의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 B의 무자력이 확인되고, E 측의 귀책으로 변제기가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대출 원리금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 D, 피고 C이 별다른 근거 없이 채무원리금의 부담을 거절하는 경우까지도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채무 분담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이와 달리 위 조항이 피고 C, D가 임의로 이행을 거절함이 명백한 경우까지 처리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변제기가 유예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미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 볼 여지가 크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이 변제하여야 하는 20억 원 중 6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과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202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23. 10.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20억 원 중 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출금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D에게 송달된 2023. 10.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찬우

판사전준영

판사정문기

- 1) 6억 5,000만원 = 20억원 × 32.5%
- 2) 4억 5,000만 원 = 20억 원 × 22.5%
- 3) 피고 C, 피고 D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채무를 부담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